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1월 21일, 윤준병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1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3.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8. 11.) 상정, 축조심사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8.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준병의원)

현행법은 개물림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질병 등으로 인해 중성화수술을 받기 곤란하거나 기질평가장으로서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없이 중성화수술 및 기질평가를 받도록 하고 마리당 최대 25만원의 기질평가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제도에 대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시·도지사로부터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육허가를 받기 위해서 맹견과 함께 장거리를 이동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맹견사육허가의 요건으로서 중성화수술 및 기질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맹견 5종에 한해 기질평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맹견사육허가권자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허가를 받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현중)

가. 맹견사육허가 요건 중 중성화 수술·기질평가 의무의 예외 마련 등

1) 맹견사육허가 요건 중 중성화 수술·기질평가 의무의 예외 마련

현행법은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맹견의 중성화 수술 및 기질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맹견의 월령 미달, 노화 또는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중성화 수술 및 기질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경우에 맹견사육허가 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현행법령은 ①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와 ②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맹견으로 지정한 개를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맹견의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기질평가 등 요건을 충족하여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개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인 맹견사육허가 요건에 대해 기존 맹견 소유자등은 허위 사망신고, 연락두절 및 기피 등 반발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맹견의 사육이 음성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맹견의 월령 미달, 노화 또는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중성화 수술 및 기질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경우에 맹견사육허가 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물림사고 예방이라는 맹견사육허가 제도의 도입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보임.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맹견사육허가 신청 독려를 위하여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경우의 제재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와 맹견사육허가 조건을 미준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97조).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와 맹견사육허가 조건을 미준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음.

이는 맹견사육허가 관련 중성화 수술 및 기질평가의 예외 규정을 악용할 우려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며, 처벌의 수준 또한 적절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 시 중성화 수술 및 기질평가 등의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하여 처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나. 맹견사육허가 요건에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추가

개정안은 맹견사육허가의 요건에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의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한 교육’(이하 ‘사전교육’) 이수 의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8조).

현행법령은 맹견과 관련한 교육 및 맹견 훈련 의무로 ① 시·도지사의 명령에 따른 맹견의 사육·관리·보호 및 사고방지 등에 대한 교육(이하 ‘사후교육’) 및 기질평가의 결과를 고려한 허가 대상 맹견 훈련(이하 ‘사후훈련’) 의무와 ②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신규 교육과 매년의 보수 교육(이하 ‘정기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뒤에 허가를 받은 자의 사후교육 및 사후훈련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맹견사육허가권자의 행정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맹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도 맹견사육허가 전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 기존의 시·도지사 명령에 따른 사후교육 및 사후훈련 의무를 맹견사육허가 시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붙일 수 있는 조건으로 변경하고, ② 사전교육 이수 의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맹견사육허가권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맹견의 안전한 사육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보임.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의 사육·관리·보호 관련 교육의 실

효성 제고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다만, 실질적인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정기교육 이수 의무(법 제21조제3항) 및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규정(법 제101조제2항제3호)도 함께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 맹견사육허가 및 철회권자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

개정안은 맹견사육허가 및 철회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현행)가 아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20조).

현행법은 맹견사육허가 및 철회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맹견 소유자등은 사육허가 신청을 위해 관할 시·도 담당부서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한다는 부담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맹견사육허가 제도의 관리 및 감독(시·도지사 권한)은 동물등록정보에 의존하나 현행 동물등록업무의 권한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되어 있어 행정상의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맹견사육허가 및 철회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현행)가 아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맹견 소유자등의 장거리 이동 부담을 경감하고 맹견사육허가 제도의 관리 및 감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의 소유자등의 맹견사육허가 신청의 부담을 완화하고 맹견사육허가 관리·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다만, 법 제24조제3항·제4항은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맹견의 지정 및 사육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어, 맹견사육허가 제도의 관리 및 감독 권한이 이원화되고 맹견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라. 맹견 5종에 대한 기질평가 비용 지원의 근거 마련

개정안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에 대한 기질평가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현행법은 맹견사육허가 시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유자의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최대 25만원을 그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개물림사고 등으로 인해 기질평가를 명령받거나 신청한 경우와 달리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

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이하 ‘맹견 5종’)를 소유한 소유자의 경우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견종을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질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맹견 5종에 대한 기질평가의 비용은 소유자 부담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맹견사육허가 신청의 독려를 통하여 최근에 도입(2024년 4월 시행)된 맹견사육허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맹견 5종에 대한 기질평가의 비용을 소유자 부담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만으로는 동 비용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동물등록된 맹견 1,656마리에 대하여 마리당 추가 지원액 25만원을 고려하는 경우, 재정소요액은 4억 1,4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됨.

이에 대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맹견사육허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질평가 비용 전액 지원 등의 인센티브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에 동의하면서도, 기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소급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윤준병)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